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4가단200513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,484,800원 및 그중 880,000원 대하여 2024. 1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3. 12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8,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3. 계산근거

- 주문 1.나.항 2,484,800원 = 미지급 차임 880,000원 + 2023. 3. ~ 2023. 10. 관리비 및 연체료

1,416,230원 + 2023. 11. 관리비 및 연체료 188,570원

- 주문 1.다.항 628,570원 = 차임 440,000원 + 관리비 및 연체료 188,570원

판사 김종찬

별지